

의 정 정 보

2010 - 8 8. 10.

1.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1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45
<참고1> : 제5회 지방선거비용 보전액	78
<참고2> : 선거비용관련 위반사례	84
<참고3> : 행복한 책 읽기	91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2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4
4. 정당법	—	5
5. 정치자금법	—	6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6
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7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299호, 2010. 7.30,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9호) 및 「국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5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조제4호).
- 나.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공시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여 외국인등록번호의 일부 공시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3조제1항).
- 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3항제1호).
- 라.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에 불행사 서약한 외국 국적을 추가하고, 이중국적자란 용어를 복수국적자로 변경함(제80조의3제1항제3호).

2.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2호, 2010. 7.2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의 거래 및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954호, 2010. 1. 25. 공포, 7. 26.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301호, 2010. 7.26,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부와 대학 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교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숙련된 항공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의 항공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안 제19조제3항제10호 신설, 안 제19조제5항 단서 및 별표 11)

숙련된 항공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대량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의 항공기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신설하고, 신형 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 파견 또는 출장 중인 조종사에 대하여 연장복무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상한액 설정(안 별표 6)

2008년부터 국립·공립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를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됨에 따라 과도한 학비지원을 방지하고 각 학교 간 학비지원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비지급액의 상한선을 설정함.

다. 인사교류 대학교원에 대한 교류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별표 11)

경력직공무원에 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정부와 국립·공립 대학 간에 교류임용되는 대학교원을 포함함으로써 대학교원의 적극적인 공직 참여를 유도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정당법

【법률 제10396호, 2010. 7.2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수를 중앙당은 20명에서 200명으로, 시·도당은 10명에서 100명으로 각각 변경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시 발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안 제7조제3항 신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정치자금법

【법률 제10395호, 2010. 7.2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식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잔여재산이 아니라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2008헌마 141, 2009. 12. 29.)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금의 모금에 있어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91호, 2010. 7.2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

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개정(법률 제9765호, 2009. 6. 9, 공포, 2010. 1. 1. 시행)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만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반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최근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386호, 2010. 7.23,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

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5조 제1항제10호 및 제44조 신설)

-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목표가 투입 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2)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 3)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혜 수준이 질적·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충 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 1)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을 감소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복지향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1)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으로 “농어촌산업”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상 향토산업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2)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산품등을 활용한 향토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즉 농어촌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3) 향토산업 육성 근거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형 복합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 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2
2.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7
3.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4
4.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 ——— 36

최근 타시·도 제·개정 조례

1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75
----------	------

제안년월일 : 2010년 6월 22일
제안자 : 건설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우리나라 건설 수주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확대,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저가 실적공사비의 경직된 적용지양,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안 제1조)
- 나.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시장은 공동계약에서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참여비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100분의 49까지 높이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 라.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이 가능한 공사나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양하도록 하며, 특히 실적제한의 경우 공사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50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낮은 단가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지양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자”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지역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

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지역건설 산업자 중 건설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에 적용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다음연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전년도 활성화 계획의 평가결과
4. 지역건설산업자 및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추진 전략 및 체계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문 또는 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계약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0분의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제7조 (입찰참가 자격 완화) ① 시장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등록업종, 자격·면허 등에 대해 2종 이상 또는 복합 보유조건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제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입찰참가업체가 공동계약 방식에 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한입찰에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관련분야 시공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공사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포상)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http://www.smc.seoul.krr>]

2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740
------	-----

제출년월일 : 2010. 6.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장
(노사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가. 부산광역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 시설별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유사하여 앞으로는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나. 근로자복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이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 또는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두는 등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로자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수행하는 사업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시설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기준을 정함(안 제4조·제5조·제6조·별표 1 및 별표 2).
- 다. 사용료·이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반환 기준을 정함(안 제7조 및 별표 3).
- 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자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844-14
부산광역시노동복지회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240

제3조(사업)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4.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허가) 근로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료 등의 납부) 근로자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회의실·대강당 및 직업교육장을 사용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별표 3의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근로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경비는 사용료, 이용료 및 그 밖의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근로자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근로자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근로자 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근로자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청문)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부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부산광역시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사용료의 기준(제5조 관련)

구분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 고
부산광역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회의실	대회의실	1회2시간	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18:00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기준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100분의 20을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사용료 외 냉·난방비는 연료시가에 따라 별도 징수 · 비디오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00원을 별도 징수
		중회의실	"	30,000원	
	직업교육장		"	30,000원	
	결혼 예식장	대	1회1시간	170,000원	
		중 소	"	130,000원 100,000원	
폐백실		"	40,000원		
부산광역시 노동 복지관	대강당		1회 2시간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18:00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기준시간 초과시 매 1시간마다 100분의 20을 가산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사용료 외 냉·난방비는 연료시가에 따라 별도 징수 · 비디오프로젝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00원을 별도 징수
	회의실		"	30,000원	

[별표 2]

이용료의 기준(제5조 관련)

구분	시설별	기준	이용료	비 고
부산광역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헬스클럽	월 회원	77,000원	· 목욕포함
	목욕장	대인	3,500원	
		소인	2,000원	
	전산교실	과목당 (1명 1개월)	30,000원	
교양·취미교실	과목당 (1명 1개월)	30,000원		

[별표 3]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제7조 관련)

1. 회의실, 대강당, 직업교육장, 헬스클럽, 전산교실 및 교양·취미교실

구 분	반환금액
○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이용 개시일 전인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 전액
○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이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	○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이용 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이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 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2. 결혼예식장 및 폐백실

구 분	반환금액
○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일 2개월 전날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일 전 2개월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자료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http://www.council.busan.kr>]

③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자를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여 외부인(일반인)도 신고가 가능토록 함(안 제2조)
- 나. 신고대상 부조리행위 규정(안 제3조)
- 다. 신고방법은 공익신고서에 따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신고자 및 조력자에 대한 보호내용 규정(안 제7조)
- 마.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규정(안 제8조 부터 제11조 까지)
- 바. 보상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12조) : 보상금 지급 한도액 5천만원
- 사. 보상금 지급 제한사항 규정(안 제14조)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공무원 등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기도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을 말한다.
- 2.부조리행위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3.공익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4.보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한다.

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4.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신고방법) ① 공익신고는 별지 서식의 공익신고서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는 신고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익신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때 부조리행위의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보완) ① 교육감은 제5조의 신고내용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내용의 감사, 조사 등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 소속의 감사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과장급 장학관으로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협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그 밖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외부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 및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는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 ③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별표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⑤ 동일한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공익신고 보상금은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시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부조리 조사 및 처분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한 신고사항
 3. 교육청이나 외부기관에서 조사(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 하였던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제12조 관련)

1. 신고유형별보상기준액

신고유형		지급 기준액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 금품 ·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제3조제2호 관련 신고)		· 추정액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 행위 (제3조제3호 관련 신고)		· 3백만원 이내
그 밖에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제3조제4호 관련 신고)	관행적, 구조적 부조리 등을 근절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 5천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근절하는데 기여한 경우	· 3백만원 이내

2. 신고금액 결정 기준 등

- 가. 금품 · 향응 수수액은 감사나 사법기관의 수사 등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나. 추정액 또는 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는 위 지급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 (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 (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4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 (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7조 (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 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1]

보상금의 지급기준(시행령 제77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에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

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붙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0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

의안 번호	447
----------	-----

제출년월일 : 2010. 05. .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제정이유

가. 문화콘텐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나. 道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발전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시군 및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 협조

나.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 입주공간,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 첨단기술장비,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창업자 지원 등

다.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이 도내로 이전시 지원(안 제5조)

- 입주공간, 임대료, 고용 및 교육훈련, 첨단기술장비 등 지원

라.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7조)

마. 국제교류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안 제8조, 제9조)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조사·연구사업 협력체제 구축 등

바. 문화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1조~제18조)

- 자문위원회 15인 이내, 위원장 행정부지사, 임기 2년 등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
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
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2.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4.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
·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경상북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연구소·
단체·대학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
5.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업 등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연구기관·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집행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유치, 수출관련 협력체제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2.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3.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그 밖의 중요사항의 자문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③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문화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 관련학과 교수, 콘텐츠 제작자, 연구소, 관련업계 대표 등
3. 기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의 업무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 법령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등) ①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청심사 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자료출처 :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 46
2. 불법은행 승강기 꼼짝마 ! ——— 50
3.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살리기 위해 중앙규제 적극 푼다 ——— 53
4. 나도 몰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59
5. 엄마 공무원, 이제 마음놓고 근무하세요 ——— 60
6. 스마트폰으로 도서대출 신청하고 지하철역에서 찾아가세요 ——— 64
7. 걷고 싶은 보행자의 권리 생긴다 ——— 69
8. 한부모·조손가족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감면받는다 ——— 72
9.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 74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①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 행안부, 1조 징수목표액 중 상반기에 50.2% 달성 -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올해 체납액징수 목표액(1조44억원)중 상반기에 5,043억원(50.2%)을 징수했다.

○ 올해 체납액정리목표액(1조44억원)은 전년도 이월체납액대비 '09년도 징수목표액(25%)보다 5% 상향조정(30%)한 것으로, 금년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열악한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상반기(6.1~6.30), 하반기(11.1~12.31)

□ 2010년 6월말까지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① 광역자치단체 징수실적

- 16개 시·도는 전년도 이월체납액(3조 3,481억원)중 6월까지 징수목표액(3,348억원)을 초과달성하였으며, 특히, 연간 징수 목표액대비 6월까지 광주광역시 72.8%, 부산광역시는 67.8%, 충청북도는 61.4%를 각각 징수했다.

※ 2010년도 6월말까지 목표액대비 징수율 : 50%

② 기초자치단체 징수실적

- 금년도 체납액징수목표액대비 6월까지 징수율은 50.2%이며, 이중 135개 시군구가 50%를 상회한 반면, 97개 시군구는

50%에 못미친다.

- 연간 징수목표액대비 징수실적 상위단체는 경남 합천군 (178.3%), 서울 광진구(145.3%), 서울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 (140.8%) 순이며, 하위단체는 전북 장수(22.4%), 강원 철원군 (22.9%), 인천동구(24.2%), 서울중구(26.9%) 순이다.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율》

구 분	100% 초과	100 ~ 50%	50 ~ 40%	40% 미만
기초자치단체 (232개)	17개 (7.3%)	118개 (50.9%)	57개 (24.6%)	40개 (17.2%)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대포차에 대한 체납세 정리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체납세징수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재제수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① 대포차에 대한 체납정리기법 개발 보급

-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337,415건)을 전수조사하여 책임 보험가입자의 주소지 파악 후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 23,4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하는 등 '09년 11월부터 '10년 6월까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7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② 관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체납정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 관세청 환급금자료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등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압류를 추진하며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전자공매를 추진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굴·파급

○ 다음과 같이 자치단체로부터 체납액징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고 있다.

- 건설업영위 체납법인(시행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공동 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대구시)
- 손해보험회사 및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해 체납자가입 보험 목적물 소재지파악후 추적하여 체납액 징수(울산시)
- 체납후 국외이주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재입국 하여 활동하는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서울시)

□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최근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 “지방세 세입구조 건실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 등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을 공개하여 지방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시도별)

참고

'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6월말 현재)

(단위:억 원/%)

시도	'09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대 징수실적			
		목표액 (A)	6월 목표액(B)	실적 (C)	C/A
전국	3조3,481	1조44	3,348	5,043	50.2
서울	7,557	2,267	756	1,059	46.7
부산	1,835	550	183	373	67.8
대구	1,423	427	142	190	44.5
인천	1,615	484	161	281	58.1
광주	673	202	67	147	72.8
대전	832	250	83	121	48.4
울산	740	222	74	96	43.2
경기	10,422	3,127	1,042	1,542	49.3
강원	935	280	93	133	47.5
충북	629	189	63	116	61.4
충남	1,432	430	143	227	52.8
전북	717	215	72	129	60.0
전남	835	250	83	117	46.8
경북	1,506	452	151	203	44.9
경남	2,094	628	209	276	43.9
제주	236	71	24	33	46.5

② 불법운행 승강기 꼼짝마 !

- 행정안전부는 잦은 강우, 무더운 날씨 등에 의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 시·도 및 검사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점검은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자율 검사신청 유도에 목적이 있다.
-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불합격** 되었거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대상인 승강기 등 **약 1만4천대를** 중점 점검한다.
 - 점검방법은 시·도 담당공무원과 검사기관의 지역별 검사원으로 합동 점검팀을 구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점검결과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즉시 운행정지 등 행정 명령 및 고발조치한다.
 - ※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 휴지상태 등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관리 상태 불량으로 일반인이 추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개요 및 점검대상 승강기

참고

불법운영 승강기 일제점검 개요

□ 추진배경

- 검사 불합격 승강기 등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운영 여부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확보**

□ 추진개요

- 점검기간 : '10.8.2~9.30(약 60일간)
- 점검대상 : 검사 불합격 및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등 **약 1만4천대**

<연도별 불합격 유지 승강기 등>

년도	'06년 이전	'07	'08	'09	'10.6	계
불합격 유지	480	135	168	174	135	1,092
유효기간초과	1,050	233	460	699	583	3,025
휴지상태	4,953	1,188	1,243	1,649	986	10,019
계	6,483	1,556	1,871	2,522	1,704	14,136

- **점검방법** : 행안부, 시·도, 검사기관 등 합동점검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점검 실시
 - 검사원이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운영 여부 등을 초등 확인하고 시·도 담당공무원이 의심현장 위주로 점검
 - * 지역별 점검팀 구성 및 세부 일정은 시·도와 지역별 검사기관간 별도 협의
- **조치방향**
 - 불법운영 승강기는 즉시 운행정지 등 행정명령 및 고발조치
 - *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 운행정지 중이나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하여 일반인이 추락,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권고 조치

□ 향후계획

○ 실태조사 실시(8.2~9.30)

참고	일제점검 대상 승강기
-----------	--------------------

구분	불합격 유지	유효기간 초과	휴지상태	계
서울특별시	89	472	1,997	2,558
부산광역시	104	95	701	900
대구광역시	28	76	634	738
인천광역시	114	220	408	742
광주광역시	47	119	377	543
대전광역시	42	144	366	552
울산광역시	17	71	234	322
경기도	277	697	2,350	3,324
강원도	54	129	318	501
충청북도	57	128	316	501
충청남도	75	252	339	666
전라북도	41	158	357	556
전라남도	32	101	251	384
경상북도	47	261	492	800
경상남도	39	79	744	862
제주도	29	23	135	187
계	1,092	3,025	10,019	14,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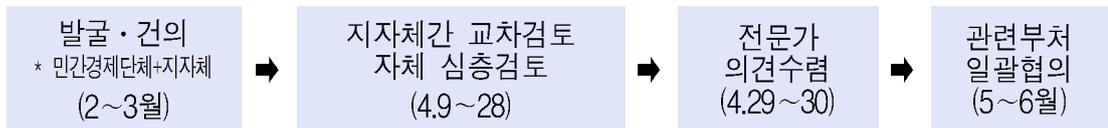
③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살리기 위해 중앙규제 적극 풀다 - 행안부, 지방에서 건의한 193건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 -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 193건을 관련부처와 적극 개선 및 보완해 나가기로 협의를 마쳤다.

○ 193건 중 창업·고용촉진 관련 28건, 투자활성화 관련 37건, 녹색성장 관련 18건, 서민생활 불편개선 관련 110건 등이며, 수용건수는 지난 '09년 하반기 161건보다 3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용(일부수용 포함) 193건, 중장기검토 86건, 불수용 431건, 기타 13건

※ 발굴과정



□ 지자체 건의규제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 근로금지 대상자 적용범위 완화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근로금지 대상 중 하나로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 인격장애 등 비정신적인 정신장애까지 '그 밖의 정신질환'에 포함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취업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를 시행규칙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07 248만명, '08 256만명)에 따라 많은 정신질환자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노래연습장 양도양수시 양수자 부담 경감

- 인천시 00구의 경우 연 100여건의 노래연습장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리기간이 3일이나 걸리는 '변경등록신청서'로 사업자 변경등록을 하고 있음(유사업종인 게임업은 처리기간이 즉시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만으로 변경)
- 향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로 노래연습장 영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임

○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감면' 개선사항은 환경부에서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개선이 추진되는 과제로
-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이미 개정(10.5.25)하였으며, 이번 건의 및 협의를 계기로 향후 세부적인 감면 대상 범위를 규정할 세부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조속하게 마련될 예정임
- 관련규정의 정비가 완료되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건축물의 저변확산과 에너지 절약 등 실천의

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선박(부선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 제외)에 타사광고를 허용하여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전산지내 병원시설 안에서 음식점등 편의시설을 설치를 허용하여 병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박경국 기업협력지원관은 “소관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규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점검 및 지원할 계획”이라며,

- “건의규제 중 아직 소관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과제들도 조속히 협의를 완료 및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빠른 입법화 등을 통하여 실제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 불수용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리실의 검토·조정을 통하여 최종 확정하고, 수용과제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주요 규제개선 협의내용

< 주요 규제개선 협의내용 >

□ 창업·고용촉진 분야

- 근로금지 대상자 적용범위 완화(고용노동부)

- 근로금지 대상자 중에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은 포

괄적으로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사회적 편견 양산 우려

- ➔ 정신보건법 상 '정신질환자'에 인격장애 등 비정신적 정신장애까지 포함하고 있어 해석상 오해소지가 있음,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를 시행규칙에서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0.8월 까지)

○ 경제자유구역사업 인허가 의제대상 확대(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은 제외(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는 의제처리 대상임)

- ➔ 경제자유구역사업 인허가 의제대상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포함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 마련('10.4), 국회제출('10.12월)

□ 투자활성화 분야

○ 보전산지 내 병원 편의시설 설치 허용(산림청)

- 보전임지(임업용)내 건립된 병원내에 의료종사자, 환자, 내방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 입지가 불가
- ➔ 보전산지에서 병원내에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10.12까지)

○ 선박에 타사 상업광고 허용(행정안전부)

- 사업용자동차, 비행선, 도시철도차량 등에 타사 상업광고 가능하지만 선박에는 자사광고만 허용하고 타사 상업광고 불허

- ➔ 선박에 타사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10년 하반기)

○ 태권도공원 투자유치를 위한 개선(문화체육관광부)

- 태권도공원 관련 민간사업자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책 미흡

➡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태권도진흥재단 및 민간사업자에게 조성 원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10년 하반기)

□ 서민불편 개선 분야

○ 노래연습장 양도양수시 양수자 부담 경감(문화체육관광부)

- 노래연습장 양도양수에 의한 영업자 변경등록시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처리기간 3일)

➡ '변경등록신청서' 대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의함 (처리기간 즉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0년 하반기 개정안 마련 '11년 상반기 국회제출)

○ 화물자동차 허가기준 주기적 신고 완화(국토해양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기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신고(미신고시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 1대 운수사업자에게는 허가기준 주기적 신고 면제

※ 개정안 마련 및 시행('11년)

○ 산지전용신고(임산물 재배) 복구비 현실화(산림청)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시 복구비를 미리 예치(복구비 : 산지전용면적 ×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액)

➡ 임산물 재배 등 산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아 나무식재로만 복구가 가능한 경우 그 비용만 복구비로 예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0년말까지)

○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목욕장업 영업자는 욕수의 수질을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
➔ 상수도 등 목욕장 원수에 대하여 타법령에 의한 검사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질검사 제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10년말까지)

○ 자동차 이전등록시 양도인 책임보험 가입면제(국토해양부)

-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 하지 않을 시 양도인이 이전등록 신청 할 수 있으나, 양수인의 책임보험 미가입시 이전등록 불가
➔ 양수인의 책임보험 미가입시에도 양도인이 이전등록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추진('11.3월까지 초안 마련, '11. 9월 국회제출)

□ 녹색성장 분야

○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환경부)

-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징수 대상 건물 중 일정의 규모·대상 시설에만 감면혜택, 친환경건축물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이 없음
➔ CO2 배출 저감 등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10.5.25 개정, '10.11.26 시행), 세부적인 대상별 감면범위 등 마련('10.11.26까지 시행령 개정)

○ 폐기물재활용업 권리·의무 승계대상에 포함(환경부)

- 폐기물재활용업 양도, 신고업자의 사망, 법인합병 시 폐기물처리시설만 권리·의무 승계신고 가능, 폐기물재활용업은 신고증명서 반납 후 신규 신고를 하도록 규정(폐기물처리업은 권리·의무 승계 가능)

- ➔ 폐기물재활용업도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

※ 폐기물관리법 개정 추진('10.4.28, 국회 법사위 상정)

○ 환경 적색등급업소 지도점검 횟수 단축(환경부)

- 환경오염물질 배출 적색등급업소 중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경우 연간 3~4회 지도점검

➔ 지도점검횟수를 1회씩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점검기관에
재량권 부여토록 개선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개정 추진('10년말까지)

4] 나도 몰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 행정안전부는 일반 국민들 누구나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클린센터」 서비스를 7월 29일부터 시작한다.

□ 최근, 해킹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함부로 사용되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 왔다.

□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검색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도용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① 「주민번호 클린센터」 (<http://clean.kisa.or.kr>)에 접속한다.

- ②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본인인증 후 이용내역이 나타난다.
- ③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했던 사이트를 탈퇴하려면 검색된 이용내역을 클릭하여 해당사이트로 이동한 후 탈퇴신청을 한다.
- ④ 회원 탈퇴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로 직접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상에서 실명확인을 담당하는 3개 신용평가사 중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2개사가 실명확인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무료로 연계하는데 합의하여 이루어졌다.

-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보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1개사와도 계속 협의하여 모든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엄마 공무원, 이제 마음놓고 근무하세요**

- 육아휴직 대상범위(만 6세→만 8세) 확대 -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추진 -

□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에서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되는 등 육아를 위한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여성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인 육아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맹형규 장관의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가 강조하고 있는 ‘따뜻한 인사행정’의 일환으로서,
 -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공직사회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가 만 6세까지였던 것이 만8세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돼, 맞벌이 부부의 육아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기에도 부모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가능하여, 입학연령대 아이를 둔 많은 공무원들의 마음을 애태웠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9월중에 육아휴직 요건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또한, 승진소요연수에 포함되는 육아휴직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 현재 3년까지 가능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공직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다 앞장 설 수 있도록 3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모든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을 9월 중

에 개정할 계획이다.

- 통상 가임기 공무원은 보통 재직기간이 짧은 초임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번 조치로 다자녀 공무원들은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이 8월중 개정되는 대로
- 서울시 사회복지분야 인력 100여명, 노동부 직업상담분야 인력 100여명, 공통업무 분야 인력 200여명 등 총 1,000여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하여 여성 공무원들의 원활한 육아휴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시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대체인력의 보수는 채용등급의 1호봉 봉급액 상당 수준으로서, 7급 상당은 월 150만원 내외, 9급 상당은 월 120만원 내외의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주 35시간 근무기준)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직장문제 등으로 떨어져 사는 공무원들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처음으로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 5월부터 인사교류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49명의 맞벌이공무원들이 교류를 신청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일반공무원 246명이 교류를 희망하였다.

○ 이외에도 교류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수시교류 신청자 9,000여명과 맞벌이공무원들과의 교류의사를 타진하여 최종 8월중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은 행정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어려움을 수요자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라며,

○ “앞으로 여성과 맞벌이 공무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하여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례 1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둔 여성 공무원 A씨는 요즘 부쩍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다. 이제 반년만 지나면 아들이 학교에 가게 되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어린이집은 간신히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 들어가면 적응에 실패하지 않을지, 엄마가 공부를 봐주는 다른 집 아이들보다 뒤떨어져서 힘든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는 않을지. 아직 어린 아들을 세상에 혼자 내보내는 것 같아 불안하다. (교과부)

사례 2

“아침에 딸이 ”엄마 안 나가면 안돼?“ 그럴때면 정말 나 하나 잘 되자고 가족을 희생하는 것 같아 울컥했어요. 마침 둘째를 가져서 육아휴직을 하니깐 딸이 제일 좋아하더라구요.”(헌재)

사례 3

“저는 아이 키우면서 직장생활 병행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이 많이 되더라구요.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 나이가 되지 않으면...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경찰청)

사례 4

“육아휴직 업무대행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거의 활용 안되구요. 내가 안나가면 일이 바쁘다는 것을 아는데 휴직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일을 대신 해줘야 하고...”(국토해양부)

사례 5

“휴직을 해도 문제죠. 보통 애기를 가질 수 있는 젊은 여성 공무원들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휴직을 해서 경력이 확 비게 되면 같이 들어온 남자들보다 뒤처지게 되는데, 한번 늦어지게 되면 따라잡기는 어렵죠.”(검찰청)

⑩ 스마트폰으로 도서대출 신청하고 지하철역에서 찾아가세요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도서관리와 대출 서비스에 첨단 IT를 적용하는 「u-도서관 서비스」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는 그간 전국 공공도서관(약 700여개)에 전자태그 기술을 적용하여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도입률은 13%로 낮은 실정이다.

- 최근 도입하기 시작한 24시간 무인대출기도 보급률이 5%에 불과해 시민들의 도서대출·반납 편의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서울 강북문화정보센터, 광주 무등도서관 등 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보유 도서에 전자태그를 부착·관리하는 전자태그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서검색·대출예약·반납기일 알림 등 모바일 서비스 △지하철역 등 교통 요지에서 24시간 무인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리 표준을 제시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이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형태의 부처간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 행정안전부는 전자태그 도서관리시스템, 스마트폰용 도서검색 기능 등을 표준모델로 개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이 공동 활용할 경우, 개별 도서관 단위로 구축할 때보다 국가예산이 35%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올해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인근 여러 공공도서관 도서를 스마트폰으로 통합 검색하고, 대출신청한 도서는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받을 수 있어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u-도서관 서비스



공공도서관 RFID구축

- 도서 RFID 태그부착
- 대출/반납 등 관리
- 지역내 통합대출



24시간 무인예약 대출시스템

- 24시간 예약자료 대출반납
- 지하철 등 공공시설 설치



도서관 위치 지도검색

도서검색 예약대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서비스

- GIS기반 도서관 위치 안내
- 도서검색, 예약대출, 알림
- 모바일 회원증
- SNS기반 참여 서비스

참고 1 u-도서관 서비스

□ 개요

- 전자태그 기반의 공공도서관 도서관리, 도서관간 통합검색·대출, 24시간 무인대출·반납 및 스마트폰 기반의 도서이용 시스템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서비스 내용

- 공공도서관 표준자료시스템 및 전자태그 기반 도서관리 구축
 - 보유도서에 전자태그 부착, 인근 도서관간 통합 검색·대출 구현
- 스마트폰 기반 u-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예약대출, 연체·희망도서 도착알림 등 서비스 제공
-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24시간 무인대출·반납기 운영
 - ※ 스마트폰으로 도서대출 신청시 대출 장소를 지하철역 24시간 무인대출·반납기로 지정하면 신청자 인증을 거쳐 언제나 도서를 대출·반납 가능

□ 2010년 서비스 대상 도서관

-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 소재 6개 공공도서관
 - 서울특별시 :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송중문화정보센터
 - 광주광역시 : 무등도서관, 산수도서관

참고 2 서비스 전·후 비교

실시 전 (before)



실시 후 (after)



④ 걷고 싶은 보행자의 권리 생긴다 !

- 행안부, 가칭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보행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7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인 보행권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또한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과 보도·이면도로 등 보행공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우리나라에서 길을 걸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작년에만 2,200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로, 이는 OECD 평균 17.2%의 2배가 넘고, 벨기에, 미국 등 다른 외국의 10% 수준과 비교해 4배정도가 높은 수치로 그간 안실련, 녹색교통 운동 등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를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도로의 가장자리구역으로만 통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고, 교외의 지방도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대부분의 도로가 별도의 보행 공간 없이 차도에서 차량을 피해 걷거나, 일부 갓길을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 또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전주, 신호등, 가로등, 케이블 박스, 불법주정차 등 각종 시설물과 노상적치물·돌출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보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와 함께 사람이 많은 도심지에서도 보행자길이 중간에 단절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육교, 지하보도의 설치로 노약자, 장애인 등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행이 불편하고 위험한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보다 차량 이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번에 추진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길 및 보행권을 정의하고, 보행자길의 통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행환경정비 5개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특별히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보행이 불편하여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하도록 하며,
- 보행자의 걷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태·문화탐방, 체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보행자전용길을 지정 및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보행자길에서 보행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과 돌출간판 등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이 있다

- 이번 법률이 제정되면 가장 기초적인 보행권이 정립됨은 물론이고, 보행자 길에서 보행자 우선 원칙이 적용되며, 현재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母法)이 마련된다.
-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문화·생태탐방로 등과 같은 국민의 걷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행자 전용길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보도 등 보행자 길에서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어두운 뒷골목길 등에 보안등이 설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cctv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
 - 이와 함께, 보행 장애물에 대한 이전 조치와 보행자에게 과도하게 불편감을 유발하는 매연, 분진을 뿜는 행위 등이 제한되어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법이 마련되면 기본권인 보행권이 확립되어 국민생활이 편리해지고, 보행자의 안전이 법적으로 강화되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④ 한부모·조손가족 주민세 등 각종 공과금 감면받는다

- 앞으로 한부모·조손가족, 노인, 청소년, 주거취약계층(홈리스)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각종 생활민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민원 제도개선안’을 여성가

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7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은 주민세와 주민등록 발급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생활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 또한 친부모의 양육권 보호 및 입양아동 권리보호를 위해 출생 후 일정기간 경과시에만 입양에 동의할 수 있는 '입양결정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 65세 이상 노인운전차량에는 실버(경로우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여 노인 운전자의 보호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면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 가정형편이나 성적 등으로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 또한, 앞으로 채무가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생기는 임금이 압류당하지 않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은 노인과 청소년 분야를 비롯하여 정부의 관심과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불편을 집중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단체를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47개 과제의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별첨 1>과 같다.

※ 생활민원 제도개선은 '09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1개 분야 86개 과제를 개선

-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자영업 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 금번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은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 관련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고,
 -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 금번 대책에서는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④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시행 -

- 금번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지표와 재정위험 단계별 세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둘째, 금년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사전적으로는 최근 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 특히,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했다.
 - 또한, 사후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

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 특히, 채무가 과다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무감축 목표 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지방공사채 건전관리도 강화하여 발행승인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공기업별로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무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평가지 부채관리노력·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셋째,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패널티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전면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 우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을 '10년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2.6%, (28조원 수준)에서 '12년 5%(5조원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 또한, '11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재정분석결과(10개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을 잘 하는 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넷째,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최근 주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금년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사 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사 표준면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 한편,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다섯째,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해 왔으나,
- 앞으로는 매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유사 자치단체 상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를 추진한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인구·재정규모·재정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채무비율 및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현황을 통합공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아울러, 현재 100개 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여섯째, 금년 8월부터 현행 재정분석·진단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

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일제점검에는 민간전문가(교수, 회계사), 중앙·지방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 일제점검을 통해 재정상태 건전성과 재정운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한 총체적 전략과 대책을 논의하고, **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 시·도 발전연구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세원확충과 과세기반 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금년에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아울러,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금년중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참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지방선거
선거비용보전액 3,394억여원 지급
= 조사결과 고발 12건, 수사의뢰 1건 조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총 3,394억여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7월 30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후 곧바로 3,800여명의 선관위 직원 등으로 중앙선거비용조사부, 시·도광역조사반 및 구·시·군조사반을 편성하여 7,220명의 보전비용 청구와 관련된 업체 등 50,000여개를 중심으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내역을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번에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428,785백만원에 대하여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지급하는 비용은 총 3,394억여원이며 선거별 지급액은 ▲시·도지사선거 38,856백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6,309백만원 ▲지역구광역의원선거 50,540백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58,585백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8,617백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98,810백만원 ▲교육감선거 53,062백만원 ▲교육의원선거 24,671백만원이다.

이번 보전청구액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271,193백만원과 대비하여 157,59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로 도입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액 98,082백만원이 추가되었고,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운동방법이 확대되었으며 보전액 결정기준인 통

상적인 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원인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청구한 보전청구액보다 893억여원을 감액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상가격 초과비용·예비후보자 비용·위법 관련 비용·일반물품구입 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금액 657억여원과 선거관련 범죄 기소 및 고발에 따라 보전이 유예되는 11억여원 및 보전청구한 후보자 중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미만에 해당하여 보전청구액의 50%가 제한되는 225억여원을 각각 감액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실사과정에서 밝혀진 주요사례로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2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 8건, 허위 회계보고 2건, 회계보고서 미제출 1건 총 13건의 중대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이중 12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하였다.

주요 위반행위 사례를 보면, 기초단체장선거에서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230여만원)하여 회계책임자를 고발하고 선거비용초과 지출액의 2배를 보전유예 하였다.

또한,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 21여명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7,795,000원을 지급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18회 전송한 위반사례가 있어 선거사무장 등을 고발하고 그 위반행위에 소요된 금액의 2배를 보전유예 하였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

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10월 11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많은 유권자가 허위 신고 등 위법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 선거가 근절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앞당겨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결정액 등 현황

1] 보전비용청구자수 현황

(단위 : 명)

선거명	후보자수		보전청구자수						청구비율(%)	
			제5회			제4회			제5회	제4회
	제5회	제4회	계	100%	50%	계	100%	50%		
시·도지사	58	66	38	32	6	39	34	5	65.5	59.1
광역의원	비례	121	70	41	41	46	46		33.9	65.7
	지역	1,779	2,068	1,589	1,484	105	1,799	1,537	262	89.3
구·시·군·장	780	848	569	518	51	597	517	80	72.9	70.4
기초의원	비례	563	597	299	299	334	334		53.1	55.9
	지역	5,862	7,995	4,371	3,424	947	4,343	3,152	1,191	74.6
교육감	81	-	56	44	12	-	-	-	69.1	-
교육의원	274	14	257	238	19	14	14	-	93.8	100.0
합계	9,518	11,658	7,220	6,080	1,140	7,172	5,634	1,538	75.9	61.5

※ 후보자 및 보전청구자수에 있어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수의 합계임.

※ 보전청구자수는 보전청구대상자(7,246명)중 무투표 당선 등으로 미청구한 후보자수(26명)가 제외됨.

2 보전비용지급액 현황

1 총괄

(단위:백만원)

선거명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A)	보전청구액(B)		보전제한액(C)		보전지급액 (D=B-C)		평균지급율(%)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제한액 대 비 (D/A)	청구액 대 비 (D/B)	
시·도지사	1,563	43,285	1,139	4,429	117	38,856	1,022	65.5	89.7	
광역 의원	비례	218	6,796	166	487	12	6,309	154	70.6	92.8
	지역	53	62,895	40	12,355	8	50,540	32	60.4	80.0
구·시·군장	165	70,500	124	11,915	21	58,585	103	62.4	83.1	
기초 의원	비례	51	9,873	33	1,256	4	8,617	29	56.9	87.9
	지역	45	137,354	31	38,544	9	98,810	23	51.1	74.2
교육감	1,563	66,098	1,180	13,036	233	53,062	947	60.7	80.2	
교육의원	248	31,984	124	7,313	28	24,671	96	38.7	77.4	
합계		428,785		89,335		339,450		61.6	84.9	

※ 보전제한액은 50% 득표자 감액, 공제액, 제한액이 포함된 금액임(이하 같음)

2 선거별 보전비용 최다·최소 지급현황

가. 시·도지사선거

(단위:백만원)

구분	시·도	후보자 (정당)	선거비용 제한액 (A)	보전청구액 (B)	보전제한 액 (C)	보전지급액 (D=B-C)	지급율(%)	
							제한액 대 비 (D/A)	청구액 대 비 (D/B)
평균	전국	-	1,563	1,139	117	1,022	65.5	89.7
최다	서울	한명숙	3,875	3,686	60	3,626	93.6	98.4
최소	제주	고희범	490	338	28	310	63.3	91.7

※ 최다, 최소의 자료는 보전대상 100% 후보자중 보전지급액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이하 나~바에서 같음).

나. 시·도의회의원선거

(단위:백만원)

구분	시·도 (구·시·군)	후보자 (정당)	선거비용 제한액 (A)	보전청구액 (B)	보전제한 액 (C)	보전지급액 (D=B-C)	지급율(%)		
							제한액 대 비 (D/A)	청구액 대 비 (D/B)	
평균	비례	전국	-	218	166	12	154	70.6	92.8
	지역	전국	-	53	40	8	32	60.4	80.0
최다	비례	경기	민주당	682	680	25	655	96.0	96.3
	지역	서울	정희석	61	58	6	52	85.4	89.4
최소	비례	경북	친박연합	193	0.354	0.163	0.191	0.1	54.1
	지역	강원 정선군	남경문	47	0.5	0.5	-	0.0	0.0

다. 자치구·시·군의장선거

(단위:백만원)

구 분	구·시·군	후보자 (정당)	선거비용 제한액 (A)	보전청구액 (B)	보전제한 액 (C)	보전지급액 (D=B-C)	지급율(%)	
							제한액 대 비 (D/A)	청구액 대 비 (D/B)
평 균	전국	-	165	124	21	103	62.4	83.1
최 다	경남 창원시	문성현	409	366	22	344	84.1	93.9
최 소	서울 중구	정동일	146	131	131	-	0.0	0.0

라.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단위:백만원)

구 분	구·시·군	후보자 (정당)	선거비용 제한액 (A)	보전청구액 (B)	보전제한액 (C)	보전지급액 (D=B-C)	지급율(%)	
							제한액 대 비 (D/A)	청구액 대 비 (D/B)
평 균	비례 전국	-	51	33	4	29	56.9	87.9
	지역 전국	-	45	31	9	23	51.1	74.2
최 다	비례 경기 수원시	민주당	99	96	0.948	95	95.6	99.0
	지역 경기 남양주시	박유희	56	49	6	43	76.4	88.0
최 소	비례 강원 홍천군	한나라당	43	0.102	0	0.102	0	100
	지역 대구 수성구	김순호	45	1	0.695	0.318	0.7	31.4

마. 교육감선거

(단위:백만원)

구 분	시·도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A)	보전청구액 (B)	보전제한액 (C)	보전지급액 (D=B-C)	지급율(%)	
							제한액 대 비 (D/A)	청구액 대 비 (D/B)
평 균	전국	-	1,563	1,180	233	947	60.6	80.2
최 다	경기	김상곤	4,073	3,805	36	3,769	92.5	99.1
최 소	인천	최진성	1,349	238	30	208	15.4	87.4

바. 교육의원선거

(단위:백만원)

구분	시·도 (구·시·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A)	보전청구액 (B)	보전제한액 (C)	보전지급액 (D=B-C)	지급율(%)	
							제한액 대비 (D/A)	청구액 대비 (D/B)
평균	전국	-	248	124	28	96	38.7	77.4
최다	경기 부천시	유옥희	386	307	27	280	72.5	91.1
최소	경북 구미시	고재경	220	14	4	10	4.4	68.5

③ 시도별 보전비용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사도명	합계	시·도 지사	광역의원			구·시 ·군·장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 의원
			소계	비례	지역		소계	비례	지역		
서울	50,560	6,429	8,484	1,100	7,384	7,699	16,532	1,898	14,634	8,287	3,129
부산	22,170	2,688	3,194	351	2,843	3,410	7,127	388	6,739	3,694	2,057
대구	12,954	1,419	1,865	166	1,699	1,950	3,989	73	3,916	2,508	1,223
인천	15,590	1,921	2,703	371	2,332	2,552	4,398	463	3,935	2,857	1,159
광주	9,965	988	1,829	133	1,696	1,546	3,024	298	2,726	1,658	920
대전	10,536	1,668	2,217	284	1,933	1,999	2,168	219	1,949	1,629	855
울산	8,114	877	1,496	160	1,336	1,339	2,246	171	2,075	1,293	863
경기	57,149	6,903	10,252	1,314	8,938	10,135	17,349	1,899	15,450	8,718	3,792
강원	15,549	1,853	2,570	200	2,370	3,097	4,457	290	4,167	2,595	977
충북	14,904	1,845	2,282	195	2,087	2,741	4,204	416	3,788	2,842	990
충남	22,259	3,736	3,750	419	3,331	4,717	6,127	572	5,555	2,335	1,594
전북	20,679	1,856	2,562	290	2,272	3,593	7,447	468	6,979	3,831	1,390
전남	22,237	1,501	2,899	276	2,623	4,243	8,399	425	7,974	3,107	2,088
경북	22,646	1,328	3,994	254	3,740	4,153	9,659	437	9,222	2,040	1,472
경남	29,561	2,772	4,547	563	3,984	5,411	10,301	600	9,701	4,838	1,692
제주	4,577	1,072	2,205	233	1,972	0	0	0	0	830	470
합계	339,450	38,856	56,849	6,309	50,540	58,585	107,427	8,617	98,810	53,062	24,671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참고 2>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사례

I. 교육감선거

① ○○시 교육감선거(낙선자 ○○○)

1. 위반내용 :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시교육감 낙선자 ○○○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 21여명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7,795,000원을 지급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18회 전송함.

2. 조치예정내용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및 자원봉사자 21명 고발조치(7. 29)하고 위반행위에 소요된 금액의 2배 보전유예(23,330,420원)

② ○○○도 교육감선거(낙선자 ○○○)

1. 위반내용 : 선거운동대가제공 및 회계보고 누락

○ ○○○ ○○○도교육감후보자가 ○○○선거사무장에게 '10. 1월경부터 선거기간 전까지 홍보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쇄물 제작비, 연설·대담차량 비용 등 명목으로 30억원의 약속어음공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공증을 바탕으로 선거사무장 ○○○이 ○○○지방법원○○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원회에 결정문이 접수됨.

○ ○○○은 '10. 1월경부터 ○○○교육문화연구원에서 8명 정도를 흥

보팀으로 구성·운영(3. 30. 부터는 신고된 선거사무소와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준비(홈페이지 게재용 만화카툰, 홍보 UCC 등 제작)를 하면서 개인비용으로 홍보팀 급여로 '10. 3월까지 6천만원 정도(1인당 월 25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홍보팀 사무기구 등 장비구입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총 2억6천7백만원 정도를 부담(제공 및 제공약속 포함)하였으며 ○○○후보자가 보전비용을 지급받으면 제반비용을 모두 보전받기로 함.

2. 조치예정내용

위반혐의자 ○○○ 및 ○○○ 선거사무장 고발조치(7. 29)하고 위법행위에 소요된 금액의 2배 보전유예(5억3천4백만원)

II. 기초자치단체장선거

㉠ ○○○광역시 ○구청장선거(낙선자 ○○○)

1. 위반내용 : 선거비용 현금지출 및 회계보고서 누락

○○구청장선거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인 ○○○는 선거사무소 현수막 제작비용을 포함하여 총 7건 17,971,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고 '10. 5. 21경 ○○○ 외 7명의 선거사무원 식비 5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회계보고서에 누락함.

2. 조치내용

위반자 ○○○ 고발조치(7. 27)

② ○○도 ○○시장선거(당선자 ○○○)

1. 위반내용 :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시장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인 ○○○의 지시를 받은 전 화홍보팀장 ○○○는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반장 5인 포함) 20명을 모집하여 오전·오후 각 10명씩 교대로 전 화홍보 등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이에 따른 시간당 보수지급기준을 책정·관리한 후 6. 1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자 6. 3 자신이 관리한 선거사무원 10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책정·관리한 보수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토록 지시한 후 회수한 금액을 자원봉사자 11인에게 4,207,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기타 선거사무원 2인에게도 총 170,000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조치내용

위반자 ○○○, ○○○ 고발(7. 21)

③ ○○도 ○○시장선거(당선자 ○○○)

1. 위반내용 : 선거운동 대가 제공

○○시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과 회계책임자 ○○○이 선거사무원 수당을 일당 3만원씩 계좌이체하였다고 회계보고하였으나, 선거사무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다수의 선거사무원 5명이 계좌로 수령한 수당 외에 현금 2,702,000원을 받았고, 또한 실비(식사비)를 받았으면서도 식당에서 선거사무원 식사를 함.

2. 조치내용

위반자 ○○○, ○○○ 고발(7. 19)하고 위법행위에 소요된 금액의 2배 보전유예(5,404,000원)

4] ○○도 ○○시장선거(낙선자 ○○○)

1. 위반내용 : 선거운동 대가 제공

○○시장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 외 추가로 '10. 6. 5~6. 19경 ○○○ 자신의 외 환은행 계좌 및 CD현금을 통하여 선거사무원 ○○○등 18명에게 선거사무원의 계좌로 총 4,293,000원을 지급하고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음.

2. 조치내용

위반자 ○○○ 고발(7. 28)하고 위법행위에 소요된 금액의 2배 보전 유예(8,586,000원)

5] ○○○도 ○○시장선거(당선자 ○○○)

1. 위반내용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장당선자 ○○○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상 지출금액(252,078,607원)중 선거공보 등 인쇄물 작성 지출금액(32,432,000원)이 위원회 원가계산(55,013,275원)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그 차액 22,581,275원을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거래가격으로 선거비용에 직권 산입하고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 4,650,580원을 합산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277,000,000원의 200분의 1 초과 지출(2,310,462원)한 혐의가 있음.

2. 조치예정내용

회계책임자 고발조치(8. 2)하고 선거비용초과 지출액의 2배 보전 유예(4,620,900원)

Ⅲ. 광역의원선거

㉠ ○○○도의원선거 (낙선자 ○○○)

1. 위반내용 : 회계보고서 허위보고

○○○도의원선거(○○군) 낙선자 ○○○의 회계보고서 및 보전청구시 특정 인쇄소에서 선거벽보·공보 인쇄료 1,969,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기획·도안료 2,200,000원을 포함하여 4,169,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전액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쇄소에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30만원을 별도로 후보자가 인쇄소에 지급하였음.

2. 조치예정내용

회계책임자 고발조치(8. 2)하고 위반행위에 소요된 금액 미보전(2,200,000원)

Ⅵ. 기초의원선거

㉠ ○○○도 ○○군의원선거(당선자 ○○○)

1. 위반내용 :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은 ○○○ 등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10. 6. 1(화) 자원봉사자 ○○○에게 현금 1,245,000원을 제공하고 6. 4(금) 자원봉사자 ○○○ 외 1인에게 2,150,000원을 제공하는 등 자원봉사자 3인에게 총 3,395,000원을 제공하였음.

2. 조치예정내용

위반혐의자 ○○○ 고발조치(7. 19)하고 위법행위에 소요된 금액의 2배 보전유예(6,900,000원)

② ○○○도 ○○시의원선거(당선자 ○○○)

1. 위반내용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시의원당선자 ○○○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상 지출금액 (55,898,699원)중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선거비용과목으로 착오 계상 금액 1,087,580원과 선거비용으로 착오 지출 보고 금액 6,122,000원을 제외한 최종 선거비용지출금액 48,599,119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48,000,000원)의 200분의 1(240,000원)이상 초과(599,119원)함.

2. 조치예정내용

회계책임자 고발조치(8. 2)하고 선거비용초과 지출액의 2배 보전유예 (1,198,230원)

③ ○○○도 ○○시의원선거(낙선자 ○○○)

1. 위반내용 : 회계보고서 미제출

○○시'가'의원선거구 낙선자 ○○○(○○시)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미제출함.

2. 조치예정내용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고발조치 예정(8. 2)

V. 교육의원선거

① ○○광역시 ○○시교육의원선거(낙선자 ○○○)

1. 위반내용 :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광역시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과 회계책임자 ○○○은 회계책임자 ○○○와 선거사무원 ○○○에게 예비후보자

시기의 수당·실비 명목으로 3,000,000원과 2,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회계보고서에 누락하였고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 외 7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5,430,000원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원 ○○○에 대한 수당·실비 530,000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후보자의 배우자 개인계좌에서 지급하고 현수막제작대금 등 총 3건 3,80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음.

또한 선거운동관련 단체복 35개를 구입하고 계약금 10만원은 현금으로, 잔금 960,000원은 계좌로 입금하였으면서 추가로 운동복 20개를 구입한 것으로 간이영수증에 560,000원을 기재하여 허위보고함.

2. 조치예정내용

위반혐의자 ○○○, ○○○, 자원봉사자 8명 고발조치(7. 28)하고 위법행위에 소요된 금액의2배 보전유예(31,840,000원)

② ○○광역시 ○○시교육의원선거(낙선자 ○○○)

1. 위반내용 :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광역시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 ○○○의 회계책임자 ○○○은 전화선거자원봉사자 10명 각자에게 5. 28에 현금 49만원과 6. 1에 현금 42만원 총 910만원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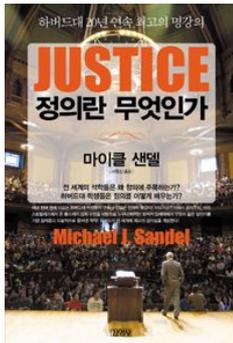
2. 조치예정내용

위반혐의자 ○○○, ○○○, ○○○ 수사의뢰 조치(7. 21)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참고 3>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명 : 마이클 샌델

출판사 : 김영사

출판년 : 2010년

페이지 : 404

가 격 : 15,000원

매년 천여 명의 하버드대 학생들이 연속 수강하는 전설의 명강의! 자유지상주의에서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 롤스까지 실제 수업을 바탕으로 누구나 빠지는 도덕적 딜레마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가장 흥미롭고 도발적으로 풀어낸 역작!”

존 롤스 이후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공동체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4대 이론가로 손꼽히는 샌델 교수의 실제 하버드대 강의 〈Justice〉를 바탕으로 쓴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가 출간되었다.

〈Justice〉 강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수업으로 손꼽힌다. 7000명도 채 안 되는 하버드대 학부생 가운데, 무려 천 명의 학생들이 대학 극장을 가득 메운 채, 정치철학의 중대한 질문을 오늘날의 골치 아픈 문제에 접목시키는 샌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

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도덕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개인의 권리와 공익은 상충하는가? 자유 민주 사회에서 정의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과 이견이 난무하는 이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러한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한다.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행위의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상이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기 마련이다. 정치철학이 이런 상황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장을 다듬고, 민주 시민으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대안에 도덕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버드대 학생들을 사로잡는 흥미진진한 여정을 독자에게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책은 정의의 의미를 찾는 서정적 탐사이며,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독자에게 그동안 익히 들어온 논쟁을 새롭고 명쾌한 방식으로 고민해보라고 권유한다. 샌델은 이러한 논쟁에서 극적이고 도전적인 발상을 선보이면서, 철학을 이해하면 정치와 도덕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한 사회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결정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개인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